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일자 : -

작성자 : -

피해 교원

소속 (공립/사립/ 기타)	성명	성 별	주소	연락처	교육 경력	기본정보 (정규교원/기간제교원/담임/ 특수교사 여부)
OO학교A	관계 인A	-	[주소 A]	[연락처 A]	-	-

침해 관련자

소속 (공립/사립/ 기타)	학년/반	성명	성 별	관 계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남/여/특수교육/대 상자여부)
OO학교A	1학년 1반	관계 인B	남	학 생	[주소 A]	[연락처 B]	-

보호자

성명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성별	연락처
보호자A	여	[연락처B]

사안 내용

사안 개요

일시: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경

장소: 1학년 1반 교실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피해 교원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피해 교원 관계인A가 관계인B 학생이 책상 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지도하였으나, 학생은 이에 불응하며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해 교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관계인B 학생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 교원의 어깨를 밀치는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장면을 교실 내에 있던 학생이 목격하였다. 피해 교원은 해당 행위로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을 입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업 중 반복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명백한 거부와 폭언·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과 욕설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교사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수의 목격 학생 진술과 피해 교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치하여 해당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초 발생 여부

최초 발생 사안	교육활동 침해 이력 있음	
V	-	-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보위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쟁점 사안

피해교원 주장

2024년 3월 11일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관계인B 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학생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 사용하였으며, 피해 교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피해교원 근거

피해교원 녹취록 음성파일, 피해교원_진단서, 참고인 진술서

침해 관련자 주장

당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교사로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억울한 마음에 감정이 격해졌고, 우발적으로 손이 나가 교사의 몸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폭행하거나 해칠 의도는 없었으며,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침해 관련자 근거

피신고인(학생) 의견서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주장

-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근거

-

목격자(참고인) 주장 및 근거

목격자 (무)	목격자 (유)	목격자 진술 내용		
-	v	성명 : 관계인A	관계 : 같은 반 학생	내용 : 2024년 3월 11일 오전 국어 수업 시간에 1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선생님께서 관계인 B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지도를 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관계인B 학생이 지도 이후에도 선생님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실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계인B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며 양손으로 선생님의 어깨를 미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 단순히 스치거나 우연히 닿은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힘이 들어간 행동으로 보였으며,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는 모습도 확인하였고, 학생이 큰 소리로 거친 말을 하는 장면도 있었으며, 해당 발언은 수업 중 교사에게 하는 말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v = 해당, - = 비해당

입증자료 첨부

- 피해교원 녹취록 음성파일

- 피해교원_진단서
- 참고인 진술서

교육활동 침해유형

공무업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
V	-	-	-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							-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부당한 간섭 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
기타							-

*v = 해당, - = 비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관계인B 학생이 책상 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피해 교원이 확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지도하였으나, 학생은 이에 불응하며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해 교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큰 소리로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명예훼손/모욕]** 양손으로 피해 교원의 어깨를 밀치는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상해/폭행]**. 이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고 교실 전체가 혼란스러워졌으며 **[공무업무방해]**, 학생의 행동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명백한 거부와 폭언·폭행에 해당하였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피해교원의 부상 정도는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으로 경미함.
- 해당 학생의 경우 과거 교사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음.
-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욕설 및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어 침해행위의 심각성이 있음.

피신청인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 사실 및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교사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함.
- 사과 의사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반성의 태도는 미흡함.

관계회복정도

- 학부모가 피해교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였음.
- 학생은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함.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비해당

침해 관련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비해당

피해교원 보호조치

- 공무상 병가(6일)
- 특별 휴가(5일)
- 치료·치유비 지급(50만원)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5회)

기타사항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 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 상 청구 소 제기 등)	기 타
-	-	-